

문서번호	안전관리처-4023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7.08.31.
공개여부	공개

대리	팀장	안전관리처장	경영전략본부장	
박훈	김정준	고민희	08/31 박관선	
협 조	산업안전국장	이영재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2017년 3/4분기 산업재해예방 실시계획 보고

2017. 8

2017년 3/4분기 산업재해예방 실시계획 보고

공단 사업장 시설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유해 및 잠재위험요인을 사전 발견·조치하고, 신규사업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중점점검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 2017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전관리처-409, '17.1.23)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9. 4(월) ~ 9.25(월), 기간 중 16일
*일정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대상 : 월드컵경기장 등 20개 현업부서
- 점 검 자
 - 사 측 : 안전·보건관리자 등 6명
*안전관리처장·시설안전팀장은 점검기간 중 수시점검
 - 노 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점검방법 : 산업안전·보건 분야 세부 점검사항(별첨)에 의한 점검

점검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중점 점검사항
 - 작업장 바닥, 계단 미끄럼방지 및 이동식사다리 등 관리상태 점검
 - 유해 또는 위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여부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여부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여부 등

※**신규사업장 중점사항**(고척돛경기장, 상수도지원처, 공공자전거운영처, 동대문지상상가)

-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준 준수 여부
- ✓ 안전장구류 지급 및 보관상태 등

- 2017년 산업재해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점검
 - 상반기 산업재해예방 점검결과 미조치사항 : 총 3건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시정·보완,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 해당부서에 조치요청
 -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발굴된 사항은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우선 시정 요청 후 문서시달(필요시)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긴급사항은 현장 즉시 조치
 - 조기조치 불가 사항은 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처)

□ 행정사항

- 3/4분기 산업재해예방점검 계획 통보(전 부서)
- 산업재해예방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해당부서)
- 수범사례 발굴 및 타부서 전파(필요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무면제 협조(상가운영처)

- 붙 임 :** 1. 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순회점검 세부점검 일정 1부
2. 점검 보고서(복명서) 1부
3. 점검사진(양식) 1부
4.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점검사항 1부. 끝.

3/4분기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 일정

점검일정	점검부서	사업장	비고
9. 4(월)	주차시설운영처	서부주차관리소(신방화,개화역,개화산역,구파발), 차고지(강서)	
	공동구관리처	공동구(상암, 목동, 여의도)	
	도로환경처	도로환경처 전진기지	
9. 5(화)	주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차고지(중랑),동부주차관리소(창동),장애인콜택시(창동관리팀)	
	공동구관리처	공동구(가락, 개포, 상계)	
9. 6(수)	청계천관리처, 상가운영처	청계천, 유지용수관리소, 글로벌 센터	
	총무처 상수도지원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청사(장애인콜센터, 교통상황실, 주차통합센터,방재센터 등) 동부수도관리소, 공공자전거(중랑센터)	
9. 7(목)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장충체육관, 공공자전거(상암센터)	
	공사감독2,3처	주요공사현장(굴착 및 주택가 인접 공사현장)	
9. 8(금)	서울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공사감독1처	주요공사현장(굴착 및 주택가 인접 공사현장)	
9. 11(월)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홍지문터널(사면포함) 및 자동차전용도로(강북 노선) / 도로 교통정보시설 등	
9. 12(화)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상수도지원처	구룡터널(사면포함) 및 자동차전용도로(강북 노선) / 도로 교통정보시설 등, 강남수도관리소	
9. 13(수)	상가운영처	을지로관리소(신당, 을지로, 을지입구, 시청광장, 인현)	
9. 14(목)	추모시설운영처 상수도지원처	시립승화원 및 공원묘지, 중부수도관리소	
9. 15(금)	추모시설운영처	서울추모공원	
9. 18(월)	상가운영처	영등포관리소(영등포역, 영등포로터리, 영등포시장)	
9. 19(화)	돛경기장운영처 상수도지원처	고척돛경기장 및 수익시설 등, 강서수도관리소	
9. 20(수)	상가운영처	명동관리소(명동,소공,명동역,회현,남대문)	
9. 21(목)	상가운영처	종로관리소(동대문,청계6가,종각,종로4가,종오,청계5가,마전교)	
9. 22(금)	상가운영처	터미널관리소 및 강남관리소(강남역,잠실역)	
9. 25(월)	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중부주차관리소(종묘,세종로,동대문,한강진),혼잡통행료관리소, 동대문지상상가	
		동부주차관리소(도봉산,화랑대,천호,잠실)	

※ 점검자 및 일정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안전관리처장 및 시설안전팀장은 점검기간 중 수시 점검)

점검 보고서(복명서)

- 점검일시 : 2017 . . . ()
- 점검현장 :
- 점검결과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 유해 또는 위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여부	
○ 안전수칙 준수여부 - 공사현장 및 작업현장 등의 안전수칙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MSDS 비치·적정성 및 GHS 부착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여부	
○ 산업재해발생 유해위험요인 - 시설물 노후·결함·파손 등 유해요인 등	
○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 시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등 기록·보존 여부	
○ 보호구의 지급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여부	
기타(특이, 모범등)사항	

※ 첨부 : 증빙 서류(사진 등)

2017 . . .

확인자 : (인)
 점검자 : (인)
 점검자 : (인)
 점검자 : (인)

점 검 사 진

사진번호	점검장소(위치)
지적사항 :	
<i>135×85</i>	
사진번호	점검장소(위치)
지적사항 :	
<i>135×85</i>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점검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점 검 항 목

-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의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등 기록·보존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점 검 항 목

- 유해 또는 위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여부
-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점 검 항 목

- 안전보건관리규정 최신화 및 게시 여부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2조(보호구의 지급)

점 검 항 목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여부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점 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바닥, 창문, 출입구 설치 상태 - 옥내 통로, 가설 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 설치상태 - 계단 단 높이, 미끄럼방지 등 관리상태 - 비상구의 설치 및 표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기구위험방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축의 덮개 등 설치상태 - 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 - 청소,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등의 안전조치 실태 ○ 목재가공용 기계(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둥근톱, 띠톱,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및 고저수위조절장치 설치 ○ 연삭기, 롤러기, 연마기, 선풍기, 포장기계, 식품분쇄기 등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중기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안전조치 - 방호장치 설치여부 -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 전도, 접촉 등의 방지 조치 -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작업장 작업 시 안전조치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유류 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 - 통풍 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 소화설비, 방화조치, 화기 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점 검 항 목

○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방호조치
- 전기기계·기구 접지실태
- 전기기계·기구의 설치기준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 이동형·휴대용 전기기계·기구회로상 누전차단기 설치실태
-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 비상전원 공급설비 실태
- 용접봉 홀더의 적정성
- 임시전등에 보호망 설치 등 조치
- 전기기계, 기구조작, 보수, 점검 시 안전조치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안전조치

○ 배선 및 이동전선 위험방지

- 배선 등의 절연피복 손상여부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 관리 실태
- 통로바닥에 전선방치여부
- 꽃음 접속기 설치 사용실태

○ 정전작업

-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 실태
- 단전기 등의 개·폐시 안전조치
- 정전작업 요령 작성 및 교육실시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 활선작업 및 근접 작업 시 안전조치
- 활선작업요령 작성 및 교육실시
- 시설물 건설 작업 시 감전방지 안전조치
- 절연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 정전기에 의한 폭발 화재·감전방지 조치(겨울철)
- 피뢰침의 설치여부 및 설치상태

점 검 항 목

○ 중량물 취급 시 안전조치

- 작업계획 작성여부
- 중량물 취급시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여부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시 안전조치
- 신호에 의한 작업여부
- 조명의 확보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여부
- 섬유로프 사용전 점검 여부
-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점 검 항 목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적정여부

7.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점 검 항 목

- 대 상 : 예초기 등 5종
- 방호장치 상태 확인 : 성능검정품 여부 / 정상작동여부

8.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점 검 항 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구분성분 명칭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회사·제품별 및 컬러인쇄
- 각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상태